

서울고등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2038340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인진, 오성진, 최영철, 이창민, 류채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강정완, 권영균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재현, 정재훈

변론 종결2024. 5. 22.

판결 선고2024. 7. 3.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가합563361 판결

환송전_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3. 8. 선고 2018나2033723 판결

환송판결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2487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988,299.44달러 및 이에 대한 2017. 9. 5.부터 2024.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235,374.3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하고, 이는 '미합중국 통화 달러'를 의미한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1,762,996.09달러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원고와 피고 등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보증계약상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증금액 중 일부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였다. 한편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원고에 대한 보증책임이 면책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의 관리은행으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면책금액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구한 주위적 청구 중 일부인 527,621.79달러(청구액 1,762,996.09달러 - 신용보증조건 위반 면책금액 1,235,374.30달러)를 인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구한 예비적 청구(1,235,374.30달러)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는 한국무역보험공사(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예비적 피고)는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환송판결). 이에 따라 원고의 한국무역보험공사(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중소기업은행(이하 위 은행들을 '이 사건 대출은행들'이라 한다)은 2009. 1. 2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이 수주한 D 포함 19척 선박의 건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매자금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 같은 날 건조될 선박의 인도수납금(인도대전)을 대출채무 상환재원으로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인도수납금관리계좌와 상환금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금 및 계좌 관리약정(이하 '이 사건 관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이 사건 관리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대출계약]

제1조(용어의 정의)

· 관리은행 :

대출금 및 계좌 관리약정에서 관리은행으로 정한 피고 B를 말한다.

· 대주 :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대주인 피고 B과 원고, 중소기업은행 및 그 승계인을 말한다. 대주 또는 그 각 승계인 전체는 '대주단'이라 하며, 이 사건 대출계약과 같은 날짜에 대주들 상호간에 체결된 대출거래약정을 '대주간계약서'라고 한다.

· 대출약정금 :

대주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대출하기로 약정한 대출한도액으로서

이천억원(200,000,000,000원)과 이천만 미달러화(20,000,000 미달러화)를 합한 금액. 대주 별 대출약정금은 피고 B 일천오백억 원(150,000,000,000원), 중소기업은행 오백억 원(50,000,000,000원), 원고 이천만 미달러화(20,000,000 미달러화)이다.

· 본건구매 :

차주가 1)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하여 대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2)

대출기간(대출최초실행일로부터 최종 상환·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 대상제품을 포함한 수출선박의 건조에 사용될, 3) 국외에서 구매하는, 4) 강재 등 선박건조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구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2조(대출약정)

(1) 대주단은 대출약정금을 한도로 이 대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주가 인출요청한 금원을 차주에게 대여하기로 한다.

(2) 차주는 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본건구매 대금 지급 등 대주와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허용하는 비용 등의 지급을 위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대출의 실행)

(1) 차주는 대출실행기간 중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실행예정일의 2영업일 이전(관리은행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관리은행이 동의한 날까지) 관리은행에게 붙임 1 양식(생략)에 의한 인출요청서를 1회 또는 수회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의 실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이 대출계약에 의한 대출은 관리은행이 각 인출요청서상의 대출신청금을 각 대주에게 각 대주의 대출약정금액간의 비율에 맞게 정을 배분하여 각 대주로부터 받은 대출약정금(각 대주 별로 백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인출요청서에 명시된 대출금계좌 또는 차주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거나 관련 신용장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실행하며, 동 실행으로 차주는 동 금원을 차입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1. 직접지급방식에 의한 대출실행 : 관리은행이 차주가 본건구매의 구매대금입금을 요청한 국외의 강재 등 선박건조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결제를 위한 매도인의 계좌 등에 제2항에 따라 직접 입금하거나 또는 본건구매를 위하여 발행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여 대출 실행(이하 생략)

(3) 제1항에 의한 대출실행은 대출실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모두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생략)

2. 이 사건 대출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그리고 이 사건 대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령 및 차주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어떠한 계약에도 중대하게 반하거나 그에 의하여 제약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제5조(인도수납금관리계좌와 상환금계좌의 개설·유지)

(1) 차주는 대출금 및 계좌 관리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수납금관리계좌와 상환금계좌 등 관리계좌를 개설·유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8조(적극적 준수사항)

차주는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금전채무가 존속하는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3. 차주는 대출금을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이 사건 관리약정]

제1조(용어의 정의)

· 관리계좌 :

상환금계좌와 인도수납금관리계좌를 말한다.

· 상환금계좌 :

대출계약에 따른 위임인 [C, 이하 같다]의 원리금상환표상의 다음 회차 지급·상환기일의 이자금액 및/또는 분할상환금액의 지급 내지 상환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도수납금관리계좌로부터 이체된 자금과 기타 자금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이 관리약정 및 수출신용약관에 기하여 상환금관리은행에 개설된 위임인 명의의 원화 및/또는 미달러화 계좌를 말하며, 수출신용약관 특약 제4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Repayment Account"와 같다.

· 인도수납금관리계좌 :

대출계약에 따라 위임인이 지급 내지 상환할 이자와 분할상환금의 지급·상환에 사용될 인도수납금을 수납금계좌로부터 이체받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이 관리약정 및 수출신용약관에 기하여 피고 B에

개설된 위임인 명의의 미달러화 계좌를 말하며, 수출신용약관 특약 제4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Escrow Account" 와 같다.

제3조(관리계좌의 관리)

(1) 위임인은 이 관리약정에 의하여 인도수납금관리계좌(외화계좌)를 피고 B에, 상환금관리계좌(외화 및 원화계좌)를 대주인 피고 B(원화계좌)와 원고(외화계좌) 및 중소기업은행(원화계좌)에 개설하여 각 은행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위하여 관리토록 하고, 위 각 은행은 이를 승낙한다(이하 생략).

제11조(적용환율)

(1) 대출금의 산정과 상환원리금의 계산, 담보책임금액의 산정, 각 대주간 채권액의 산정, 각 대주간 의결권의 산정 등 대출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원화와 미달러화간의 환율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1미달러 당 1013.80원으로 계산한다. 다만, 이 환율은 대주간 비율 등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것이며, 차주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함에 있어서는 이 환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나. 이 사건 대출은행들은 2009. 1. 21.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대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를 대출약정금의 집행, 대출금의 관리, 대출원리금의 회수 및 수출신용보증서상 권리 실행 등과 같은 업무수행을 하는 관리은행으로 선정하였다.

제2조 관리은행의 선정

(2) 관리은행은 대주간 계약과 기타 대출거래약정 및 수출신용보증서와 수출신용보증(제작자금) 약관과 동 특약에서 각 대주 또는 대주단이 행사 또는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각 대주 또는 대주단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갖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주단 전원이 서면합의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출거래약정에 불구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이하 생략).

제3조 대출약정금의 집행

(1) 관리은행은 대출실행기간 중 차주로부터 대출약정금의 인출요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대출계약서 제3조 제3항 각호의 사유의 충족 여부
2. 인출요청서의 적정 여부

3. 대출금의 용도에 관한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이하 생략)

다. 원고는 2009. 1. 15.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C에 대출할 금원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 2,000만 달러, 보증기간 2009. 1. 15.부터 2011. 12. 19.까지(이후 2014. 12. 31.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제작자금)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원고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반환채무를 보증하였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원고로부터 보증채무금의 이행청구를 받고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3%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보증채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서의 수출신용보증(제작자금)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및 수출신용보증(제작자금) 특별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신용보증조건'이라 함은 신용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은행, 채무자, 수입자, 신용장개설(확인)은행, 대금지급국, 신용장 또는 계약서번호, 신용보증부대출금 종류, 신용보증한도, 보증방법, 보증기간 및 특약사항을 말합니다(이하 생략).

제4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① 이 약관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제6조(면책)

무역보험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은행이 제11조, 제16조 또는 제20조의 의무를 해태하여 손실이 증가된 경우(이하 생략)

제9조(신용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① 신용보증사고라 함은 아래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를 말하며 은행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의 통지기한 내에 무역보험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순번 7의 경우에는 무역보험공사의 통지를 은행의 서면통지로 갈음합니다(이하 생략).

7	무역보험공사가 은행에게 채무자를 신용보증사기업으로 정하여 통지한 때	-
---	---------------------------------------	---

제11조(권리보전의무)

① 은행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합니다(이하 생략).

제19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① 무역보험공사는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③ 무역보험공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무역보험공사가 정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이하 생략).

[이 사건 특약]

1. 이 보증서에 의한 대출금은 채무자의 원·부자재 해외조달 구매자금 증빙구비건에 한하여 취급되어야 함
 3. 이 보증서에 의한 대출 및 상환 방법은 금융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금융계약서 변경시 무역보험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4. 은행은 채무자로 하여금 Repayment Account를 설정하게 하고, 동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은 장래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기일에 상환할 원리금의 상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함. 또한, 동 계좌 잔액은 장래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기일에 상환할 원리금의 100% 이상을 항상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5. 은행은 채무자로 하여금 별첨(생략)의 선박건조계약상 인도시 잔금이 지급될 Escrow Account를 설정하게 하고, 동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은 Repayment Account에 우선 충당하여야 함(이하 생략)
- 라. 이 사건 대출은행들은 2008. 12. 19.부터 2009. 3. 24.까지 C의 대출금 인출요청에 따라

25회에 걸쳐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한 대출을 실행하였고, C은 원고에게 3,411,502달러를 상환하였다.

마. C은 조선업 경기불황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C의 채권금융기관들은 2010. 4.경 C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C 채권금융기관협약'(이하 '이 사건 자율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C에 대한 자율협약절차(이하 '이 사건 자율협약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한 대출채권자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한 장래의 구상권자로서 이 사건 자율협약에 각 가입하였는데, 원고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 사건 자율협약에 따라 2010. 3. 30. 당시 C에 대한 채권액(신용공여액, 단 채권은행간 보증에 의해서 보증된 채권은 보증한 채권은행의 채권액으로 봄)을 기준으로 해당 채권비율에 따른 의결권을 부여받았다. 그 당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주채권액은 이 사건 보증계약 등에 의한 장래 구상금채권 등 7,269억 원(채권비율 18.8%)이었고, 원고의 주채권액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 201억 원(채권비율 0.52%)이었다.

사. 이 사건 자율협약의 제16차 협의회는 2013. 12.경 채권재조정 등의 안건을 협의하여, 이 사건 자율협약의 개시 당시 채권비율이 5% 이상인 채권금융기관들이 합계 1조 6,228억 원을 분담하여 C에 출자전환하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상심사 후 해당 대출은행에 대하여 상환할 것을 결의하였다.

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4. 3. 28. 이 사건 대출은행들에 대하여 위 사.항 기재의 이 사건 자율협약의 제16차 협의회 결의 및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출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상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4. 28.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보증채무금 16,588,498달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4. 8. 22. 원고에게 위 16,588,498달러 중 14,825,501.91달러를 지급하고, 원고가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조건 및 권리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나머지 1,762,996.09달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신용보증조건 위반	사유	관련 대출(회차)	금액
① 사후대출	18, 22, 23회차	31,349,000,000원	
② 초과대출(구매대금 증빙 미비)	18 내지 24회차	3,143,124,259원	

신용보증조건 위반	사유	관련 대출(회차)	금액
① 소계		34,492,124,259원	
② 원고 분담액		1,489,434.79달러 ³⁾ 이 사건 대출은행들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인출 요청할 당시 제시한 환율에 따라 원화를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다.	
권리보전 의무 위반	③ 상환금 배분액 (= 상환금 × 면책비율) ⁴⁾ = C이 원고에게 상환한 대출금 3,411,502달러 × (원고 분담 면책액 1,489,434.79달러 / 원고의 총 대출금 2,000만 달러)		254,060.49달러
④ 면책금액(= ② - ③)		1,235,374.30달러	
@ Repayment Account 잔액		527,621.78달러	
합계(= ④ + @)	1,762,996.08달러		

자. 한편, 피고는 2014. 8. 21.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조건 및 권리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증채무금 124,465,653,000원 중 9,675,161,024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하여 위 9,675,161,02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보증채무금반환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7104)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7. 7. 11. '신용보증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금액 9,285,339,110원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권리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금액 389,821,914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 B이 항소하였으나 2018. 5.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나2046180), 피고 B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8. 12. 2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18다243478)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그런데 이 사건 대출계약 및 관리계약이 있기 전부터, 피고와 C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신주인수계약 및 여신거래 등이 있었다.

1) 피고는 2007. 3.경 C이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 75만주를 1주당 발행가액 4만원(액면가 1만원)에 인수하기로 하여 C에 현금 300억 원을 납입하였다. 위 상환전환우선주는 ①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고, ②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고, ③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09. 12. 31.까지로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우선주를 상환하는 것으로 하되 피고가 존속기간의 연장을 C에 요구할 경우 1차에 한하여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는 우선주는 상환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또한, ① 피고는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주금납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초일 산입)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우선주의 존속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는 언제든지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로 하였고, ② 전환의 경우 적용되는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정하였다.

2) 한편 C(계열사 포함)의 주식을 보유한 피고, E공제회, F중앙회, G 주식회사는 2008. 8. 8. C 측을 포함하여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위와 같은 신주인수계약에 의하여 C에 300억 원, H에 300억 원을 투자한 상태였는데, 피고를 비롯한 위 투자자들은 C의 증권시장 상장 및 주식의 가치제고를 통해 투자금 회수와 수익 등 기대하면서 C에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정 금액 초과 이사회 결의시 주주들에게 사전 통지 또는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였다(다만 그 외에 피고 등 투자자들이 C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거나 일정한 영업실적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주주간 계약서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3) 피고는 선수금환급보증,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 등을 제외하고도 C에 21건의 여신대출(2007. 12. 21. 기준 12건, 2008. 12. 31. 기준 9건)을 제공하였고, 그 계열사인 H에 대하여 6건(2008. 5. 23. 기준), I에 대하여 2건(2009. 7. 21. 기준), J에 대하여 1건(2009. 12. 9. 기준)의 여신대출을 제공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대출 실행 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26 내지 56호증, 을 제3,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복수의 참여은행이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채무자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신디케이트드 론 거래에서, 참여은행으로부터 신디케이트드 론과 관련된 행정 및 관리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아 참여은행을 대리하게 되는 대리은행 내지 관리은행은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 참여은행과

위임관계에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신디케이티드 론 관련 계약 등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고, 대리은행 내지 관리은행은 위임된 사무의 범위 내에서 위임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83700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대주간 계약에 따라 대주들인 이 사건 대출은행들 간에 관리은행으로 선정되어 대출의 실행 및 인도수납금관리계좌와 상환금계좌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대주간 계약 제3조에서 관리은행이 대출실행기간 중 차주로부터 대출약정금의 인출요청서를 받은 경우 인출요청서의 적정 여부 및 대출금의 용도에 관한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대출을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8, 22, 23회차 대출 당시 C이 원·부자재 구입자금을 결제한 후 C의 계좌로 해당 대금 상당액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행위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직접지급방식에 의한 대출이 아닐 뿐 아니라 사후대출방식에 의한 대출로서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것이고, 제18 내지 24회차 대출을 실행할 당시 C의 구매자금 증빙 구비 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은 증빙이 구비된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실행할 의무를 위반한 초과대출로서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신용보증조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 사후대출 및 초과대출로 인한 대출금 상당액 중 원고 부담분인 1,235,374.30달러에 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 등과 체결한 대주 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의 실행 및 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주인 C으로부터 받은 인출요청서와 대출금의 용도에 관한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은행이 원고로 하여금 이른바 사후대출방식 및 초과대출방식에 의한 대출을 실행하게 한 것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 은행은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위 면책금 1,235,374.30달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5)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피고는 차주인 C의 유상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300억 원6) 이 넘는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C의 주주였고, C 및 그 계열사에 대한 대부분의 여신대출을 실행하고 있었으며,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여 C의 상장을 통한 투자금 회수와 수익 등을 기대하고 있었다. 피고는 단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을 분산시키고 C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자 관리은행의 역할을 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과 설득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을 진행한 것일 뿐이므로, 손해의 책임 분담에 있어서 원고와 동등한 지위에서 취급될 수 없다.

나) 피고는 사후대출방식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C에 수요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후대출방식으로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대출은 C로부터 정치권에 제공할 금품을 전달받은 K이 피고 금융그룹 지주 회장이 된 이후 실행된 것으로 C와 피고 사이에 특수한 밀착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후대출과 관련된 대출금 지급 방식에 관하여 원·피고가 착오할 여지는 없고, 설령 달리 보더라도 대출금 입금 계좌의 명의인이 누구인지 보다는 구매대금 결제 전에 해당 대출금이 실행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항인데 이는 원고와 같은 대출참여 은행으로서는 알 수 없으므로 관리은행인 피고가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가 C의 이익에 긴밀히 결부되어 있는 주주이자 기존 대출로 인한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의 이익을 위해 원고를 이 사건 대출에 참여하게 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대주간 계약에 따라 C에 대한 대출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한 위임인으로서 그 수임인인 피고의 신용보증조건 위반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대폭 감경 내지 제한되어야 한다.7)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원고가 입은 손해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대출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계약은 C이 원·부자재 구매대금 입금 요청을 할 때 대금 결제를 위하여 원·부자재 매도인의 계좌에 대금을 직접 입금하거나 그 구매를 위해 발행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는 이른바 직접지급방식에 의한 대출 실행만 허용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 중 특약 제3항 및 약관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직접지급방식 외의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신용보증조건 위반에 해당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그 대출에 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C의 계좌로 원·부자재 구매대금 상당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직접지급방식에 의한 대출이 아니어서 신용보증조건 위반에 해당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계약 제3조 제2항 본문은 인출요청서에 명시된 대출금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고, 그 계약서에 첨부된 인출요청서 양식에서는 C을 그 대출금계좌의 예금주로 기재하고 있다. 위 규정 등에 따르면, C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대출계약이 허용하는 대출 실행 방식이라고 잘못 해석할 소지가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그 내용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 사건 대출 중 C의 원·부자재 구매대금 결제 후 대출이 실행된 이른바 사후대출방식에 의한 부분 외에 구매대금 결제 전 실행된 부분도, 대체로 원고가 C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13호증 참조). 이 부분 역시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직접지급방식을 준수한 것이 아니었는데,⁸⁾ 다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사후대출방식에 의한 대출 부분에 대하여만 면책을 주장하였고, 결국 C의 계좌로 실행된 대출 중 대출 실행 시점이 원·부자재 구매대금 지급 전·후인지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금 지급 여부가 달라짐으로써 면책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손해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입은 손해, 특히 사후대출로 인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면책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계약 자체에 해석상 오해할 소지가 많은 내용이 들어 있었고, 원고와 피고 등이 공통하여 그 부분 계약 내용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그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지우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원고는 C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한 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대출금이 구매대금 지급 전에 실행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인데 이는 오로지 피고가 책임질 사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C의 계좌로 대출금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 사건 대출계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지급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계약해석 상 견해 차이로 인한 위험을 피고만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사후대출방식에 의한 대출 부분에 대하여만 면책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C 계좌로 직접 대출금이 입금된 것이 면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대주간 계약 제3조에 따르면, 관리은행은 대출실행기간 중 차주로부터 대출약정금의 인출요청서를 받은 경우, '대출계약서 제3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의 충족 여부, 인출요청서의 적정 여부, 대출금의 용도에 관한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각 대주에 대하여 대출약정금 범위 내에서 대출계약서 제3조에 따라 각 대주에게 배분한 금액을 차주가 인출 요청한 계좌로 인출 요청한 일자에 입금하도록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계약 제3조 제2항은, 피고가 원고 등 다른 대주로부터 대출약정금을 수령한 후 일괄해서 원·부자재 매도인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그 대출금의 흐름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 대주간 계약 제3조 제2항도 이 사건 대출계약 제3조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 여기서 차주가 인출 요청한 계좌는 이 사건 대출계약 제3조가 정한 대로 매도인의 계좌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금의 집행은, C이 피고에게 자금의 집행을 요청하면 피고가 대출 실행금을 분배한 후 이를 각 대주들에게 통지하고 그 후 각 대주들이 그 자금을 각자 집행하는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피고를 거치지 않고 C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출실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5호증 참조. 당시 관리은행인 피고가 C에 직접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한편 당초 C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대출실행 방식으로 'C이 먼저 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한 후에 실행된 대출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Reimburse 방식'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C은 계속 선집행 후증빙 방식의 대출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이 역시 거절당하여 결국 앞서 본 '직접지급방식에 의한 대출실행'만 가능하도록 대출계약서 내용이 정해지게 되었다. 처음 C이 제안했던 2008. 12. 5.자 대출계약서 초안에는 '사후대출 방식, 직접지급 방식, 선집행 후증빙 방식'에 의한 대출실행이 모두 가능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는데, C의 담당자는 이 사건 대출조건 협상 과정에서 위 대출계약서 초안 등을 원고 측 담당자와 피고 측 담당자 모두에게 이메일로 송신하면서 선집행 후증빙 방식을 추가하였음을 밝히면서 그 가능성 여부와 적정문안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을 제8호증 참조). 그러나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대출실행방법을 '직접지급

방식'으로 단일화하고 나머지 대출실행방법은 모두 거절하여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대출계약 조항으로 정리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위와 같은 대출실행방법에 관한 협상 과정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사후대출방식의 대출의 경우에는 신용보증조건 위반으로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는 피고와 마찬가지로 대출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보유한 대형 은행이다. 이 사건 대출에서 참여은행인 원고는 관리은행인 피고로 하여금 수임인으로서 인출요청서와 대출금의 용도에 관한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지만, 차주인 C과의 법률관계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C의 신용위험 등을 부담하면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는 대주의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대출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행되었는데, 회차별로 대출 실행 전에 이루어지는 서류 심사 등의 업무를 오로지 피고가 전담하여 수행해야 했다.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지위와 역할, 대출 실행 경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면책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해와 관련한 위험을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

라) 원고는 피고 및 중소기업은행과 대주단을 구성하여 C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피고를 관리은행으로 정하고 수임인으로서 대출실행조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대주의 지위에 있는 원고 및 중소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C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분담비율에 상응하는 이자 수익을 얻은 것 외에 관리은행으로서의 업무수행 대가를 따로 수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가 직접 실행한 대출금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면책에 따라 입은 손해를 부담하는 것 외에 같은 경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까지 이 사건 대출의 관리은행으로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부 부담하게 된다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로 얻게 되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되어서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300억 원 가량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주주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이미 C 및 계열사에 다액의 여신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중 약 68.1%를 분담하여 대출을 실행하면서 관리은행의 역할을 한 것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이에 더 나아가 피고가 C의 주주 지위에서 또는 C과의 유착관계로 인하여 C의 수요자금 등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법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에서와 같은 신디케이트 론은 대주들의 권리와 의무의 개별성을 바탕으로 각 대주가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 역시 차주인 C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C의 신용위험 등을 감수하며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관리은행인 피고가 C의 주주의 지위에 있는 등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만이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된 위험을 온전히 떠안고 원고는 어떠한 손해의 부담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C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은 조선업 경기불황 등의 외부적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앞서 본 신용보증조건 위반행위로 인한 면책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은행들 사이에 적정하게 분배하여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988,299.44달러(= 1,235,374.30달러 × 80%) 및 이에 대하여 위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의 이행청구로 그 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2017. 9. 5.(이 사건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988,299.44달러 및 이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장석조

판사배광국

별지

1) 당초 피고 B은 2008. 12. 19. C과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 15. 원고와 함께 공동대주로서 C과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대출계약에 중소기업은행이 참여하면서 앞서 체결된 2건의 대출계약은 이 사건 대출계약으로 대체되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주위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위 1,762,996.09달러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 및 제1심은 그중 신용보증조건 위반에 따른 면책금액 1,235,374.30달러를 제외한 527,621.79달러 부분만 인용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주식회사 B)를 상대로 구한 1,235,374.30달러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위 1,235,374.30달러에 대한 면책이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대출은행들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인출 요청할 당시 제시한 환율에 따라 원화를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다.

4) = C이 원고에게 상환한 대출금 3,411,502달러 × (원고 분담 면책액 1,489,434.79달러 / 원고의 총 대출금 2,000만 달러)

5) 사후대출은 그 대출실행 요청 자체로 이 사건 대출계약이 정한 대출실행방식, 즉 직접지급방식에 어긋나는 것이고, 초과대출은 증빙자료 금액과 대출실행 금액을 비교하면 어렵지 않게 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보증조건에 위반하여 사후대출과 초과대출이 실행되게 하여 결국 면책에 이르게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원고는 C에 600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 및 H에 대한 주식인수대금 각 300억 원을 합산한 600억 원의 투자를 주장하는 취지로 보인다.

7) 피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책임감경 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 역시 피고와 마찬가지로 대출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보유한 대형은행이므로,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② 이 사건 대주간 계약 제12조는 원고에게도 확인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③ 원고의 총자산 규모, 당기순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원고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가 대리은행으로서의 업무수행 대가를 따로 수령하지는 않았다. ⑤ 사후대출의 방지는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각 계약의 문언에 따를 때 사후대출이 금지된다는 점을 인식하기도 어렵다. ⑥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궁극적인 원인은 조선업 경기 악화로 인해 차주 회사가 무자력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고, 피고 역시 대주의 입장에서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해 큰 손실을 입었으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하여야 한다. ⑦ 피고는 C의 주주이기는 하지만, C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 없고, 영업실적 목표 달성 등의 조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8) 이 사건 대출계약 제3조 제2항은 '직접지급방식에 의한 대출실행'에 관하여 '차주가 구매대금 입금을 요구한 ... 선박건조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결제를 위한 매도인의 계좌 등에 ... 직접 입금하거나 또는 본건 구매를 위해 발행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여 대출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대출금을 C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승인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